

의안번호	제 87 호
의 결 년 월 일	1999. 5 . 19. (제 83 회)

의결사항
의안가결

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 출 자	보 은 군 수
제 출 년 월 일	1999. 5 . 11 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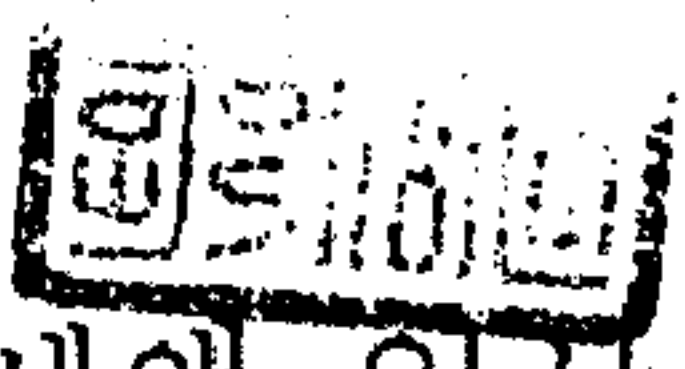
기획감사실장 심사


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87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5. 11.

제 출 자 : 보 은 군 수

1. 제 안 이 유 : '98년 12월 개정되어 '99. 1. 1부터 시행중인 지방세법의 개정예 따라 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한 균등할주민세의 세율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
2. 주 요 골 자 : ○.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조정은 군의 관할 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3,000원
○. 비영업용 승용차의 세율 조정 : 배기량에 따라 시시당 세액이 100원 - 370원을 80원 - 220원으로 종전보다 최저 20원에서 최고150원으로 세율인하, 
○. 자동차세 연세액 일지 납부기한 명문화
3. 근 거 법 령 : 지방세법 개정 (법률 제5615호. '98. 12. 31)
지방세법시행령 (대통령령 제15982호. '98. 12. 31)

- 첨 부
1.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
 2. 신구조문대비표
 3. 기타 참고 자료 (근거법령)

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보은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개인

- 가. 군의 관할 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3,000원
- 나.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세율 50,000원

제37조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영 업 용		영 업 용	
배 기 량	시시당 세액	배 기 량	시시당 세액
1,000시시 이하	18 원	800시시 이하	80 원
1,500 "	18 원	1,000 "	100 원
2,000 "	19 원	1,500 "	140 원
2,500 "	19 원	2,000 "	200 원
2,500시시 초과	24 원	2,000시시 초과	220 원

제3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연세액(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)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.

1.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: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
2.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: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
3.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: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

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적용례) 제37조제1항제1호,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개정 (안)			
제20조(세율)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.				제20조(세율)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.			
1. 개인				1. 개인			
가.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				가. 군의 관할 구역안에 주소 를 둔 개인의 세율			
1,000원				3,000원			
나.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				나. (현행과 같음)			
50,000원							
2. (생략)				2. (현행과 같음)			
②(생략)				②(현행과 같음)			
제37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				제37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---			
1. 승용자동차				1. -----			
영업용		비영업용		영업용		비영업용	
배기량	씨씨당 세액	배기량	씨씨당 세액	배기량	씨씨당 세액	배기량	씨씨당 세액
1,000씨씨이하	18원	800씨씨이하	100원	1,000씨씨이하	---	800씨씨이하	80원
1,500씨씨이하	18원	1,000씨씨이하	120원	1,500씨씨이하	---	1,000씨씨이하	100원
2,000씨씨이하	19원	1,500씨씨이하	160원	2,000씨씨이하	---	1,500씨씨이하	140원
2,500씨씨이하	19원	2,000씨씨이하	220원	2,500씨씨이하	---	2,000씨씨이하	200원
2,500씨씨초과	24원	2,500씨씨이하	250원	2,500씨씨초과	---	2,000씨씨초과	220원
		3,000씨씨이하	310원				
		3,000씨씨초과	370원				

현행	개정 (안)
제38조(납기와 징수방법) ①~② (생략)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세액(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)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 액으로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.	제38조(납기와 징수방법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연세액(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)의 100 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 으로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. 1.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: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.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: 6월 16일부터 6월 30일 까지 3.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 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: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

지방세 조례개정과 관련한 참고자료

1. 住民稅 個人均等割 稅率調整

<현 '황>

- 현행 주민세 균등할은 표준세율제도로써 표준세율의 50%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가감조정이 가능하나
-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

구 분	세 율	비 고	
		'93~'94년	'73창설~'93
○인구 500만 이상의 시	4,500원	4,000원	2,000원
○인구 50만 이상의 시 (청주)	3,000원	2,500원	1,000원
○기 타 시 (충주·제천시)	1,800원	1,500원	500원
○ 군 (군 지역)	1,000원	800원	300원

※ 세수('97기준)는 446천세대, 2,108백만원이며, 세율은 50%범위안에서 가감조정이 가능한 표준세율임

<문제점 및 검토>

- 군지역의 경우 세액(1,000원)이 등기우편료(1,170원)에도 못미치므로 폐지 요구제기
- 주민세 균등할은 부담분임의 원칙에 의거 부담하는 회비적 조세로서 폐지하는 것보다는 개선함이 타당

<개선방안>

- 현행 표준세율 제도는 실제운용하는 시·군이 전무하므로
- 실제 적용세율을 10,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군별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제한세율제도로 개선함으로써 과세자주권 확대를 통한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

2. 自動車關聯 地方稅制 改善

<현행제도>

- 비영업용 승용(자가용)은 배기량에 따라 차등하는 7단계 누진세율

※ 영업용은 cc당 18원~24원으로 문제점 없음

- 800cc이하 100원, • 1,000cc이하 120원
- 1,500cc이하 160원, • 2,000cc이하 220원
- 2,500cc이하 250원, • 3,000cc이하 310원
- 3,000cc초과 370원

- 자동차관련 '98 자동차세는 2조 1,309억원

<문제점 및 검토>

- 자동차세의 경우 대형차에 중과하는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미국측 주장으로 한·미통상 협상의제 채택
- 자동차 소유시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부담이 주택 등 부동산 보유세(재산세·종합토지세)에 비하여 과중하므로 인하하여야 한다는 여론제기

<개선방안>

현 행	개 선
• 800cc이하 100원, 1,000cc이하 120원 • 1,500cc " 160원, 2,000cc " 220원 • 2,500cc " 250원, 3,000cc " 310원 • 3,000cc초과 370원	• 800cc이하 80원, 1,000cc이하 100원 • 1,500cc이하 140원, 2,000cc이하 200원 • 2,000cc초과 220원

※ 자동차관련 지방세제의 대폭인하 문제는 지방재정 보전대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므로 국세의 지방이양 수준과 시기에 따라 추후 지방 세법개정 추진

3. 其他 未備點의 補完

가. 자동차세의 연세액 일시 납부기한 명시(제196조의6)

- 자동차세는 납세자가 원할 경우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

※연세액 일시 납부시 세액 10%공제

- 연세액 납부기한이 불분명하여 운영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1월, 3월, 6월, 9월에 각각 16일부터 말일까지 신고납부할수 있도록 명확히 개선

다. 자동차세 납세의무 승계규정 보완(제196조의7)

- 자동차를 매매등의  취득한자는 당해기분에 부과될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

- 납기가 있는달(6월, 12월)의 1일 이후(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고지서가 작성된후)에 승계하는 경우는 승계대상에서 제외하여 해석·운영상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

□ 개인 균등할 주민세 징세비용 조사표

1. 개인균등할 주민세 개항

- 가. 근거법규 : 지방세법 173조①항 및 동법175조①항 또는 동법 제 176조①
 나. 내 용 : 시장.군수가 10,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
 다. 대상 세대수 : 14,000세대(98년도 부과액 13,623세대×1,000원=13,623천원)

2. 개인균등할 주민세 원가 계산

- 가. 인건비 1,600,000원 ÷ 25일 ÷ 8시간 × 6,490시간 = 51,920,000원
 나. 우편료 14,000세대 × 1,170원 = 16,380,000원
 (반송미 포함)
 다. 수용비 OCR고지서 5박스 × 80,000원 = 400,000원
 순백전산용지 10박스 × 35,000원 = 350,000원
 창봉투 14,000매 × 50원 = 700,000원
 A4복사용지 5박스 × 20,000원 = 100,000원
 전산바인더 2박스 = 50,000원
 기타사무용품  = 200,000원
 계 = 70,150,000원
 라. 1건당 원가계산 70,150,000원 ÷ 14,000세대 = 5,010.71원

3. 타시군 적용(例)

청 주	5,000원	충 주	5,000원
제 천	5,000원	청 원	2,000원
옥 천	5,000원	영 동	5,000원
진 천	5,000원	괴 산	5,000원
음 성	5,000원	단 양	5,000원
경 북 상주시 시지역 5,000원, 읍면지역 3,000원			
충 남 금산군 미추진		대전시	10,000원

4. 각읍면 재무담당당회의 ('99. 2. 4) 의견수렴 : 5,000원

5. 의 · 정 정담회 의견수렴 ('99. 2. 23) : 3,000원

6. 의 · 정 정담회 ('99. 5. 6) : 3,000원

6. 도청 실무자 의견 : 타시군과 균형유지 (형평성)

☐ 개인 균등할 주민세 부과 절차(흐름도)

부과 절차	소요 인력
1. 주민등록 전산망에서 세대별 주민등록 자료출력 (과세기준일 매년 8월 1일·지세법175조)	평균 10개면×4시간 = 40 보은읍 8시간 = 8
2. 주민세 계획 수립 및 조사요령 직원 보수교육	11개읍면×6시간 = 66
3. 현지조사 및 담당부락별로 과세 및 비과세자료정비 (생보자.행불자.무단전입·전출.부당합산.부당분가등.지세법174조)	각면 196부락×16시간 = 3,136 보은읍 48부락×30시간 = 1,440
4. 과세자료 정비(전산입력)	10개면×16시간 = 160 보은읍 24시간×2인 = 48
5. 자료검색 및 출력 고지서 OCR 수납부 과세내역서 송달부	본청 16시간 = 16
6. 수납고지서 읍면 배부	본청 8시간 = 8
7. 고지서 분리작업 및 우편발송	10개면×8시간×2인 = 160 보은읍 16시간×6인 = 96
8. 주민세 수납(금융기관)	미산정
9. 수납자료 이송(금융기관→본청전산실→재무과통보)	본청 40시간 = 40
10. 읍면 수납자료 통보 및 징수부.수납부.체납자료.수납부소인 전산소 확인 등	10개면×40시간 = 400 보은읍×80시간×3인 = 240
11. 체납자 징수 독려	10개면×20시간×2인 = 400 보은읍40시간×4인 = 160
계	6,490시간

171 172 173 174

[illegible]

中 華 書 局 10400 - 23

2. 1. 7. (제 11)

(三)

문 부 01 - 12

책 두(세정·채두, 세정경제)판장

五、六、七

文庫
大
和

11

計 冊 本

170 171 172

1.9.

10

24 00

五 女 兵

32 12



100

제 목 시(군)세조례증개정조례(안) 시달

1. 행정자치부 세제 13400-317('98. 12. 18)호와 관련입니다.
2. '98년 12월 개정되어 '99. 1. 1부터 시행중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, 월에서 조세에 정하도록 한 증등할 주민세의 세율과 기납 조세상 일부 피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○○시(군)세조세증 개정조세(안)을 검토를일과 같이 시달하니 시군에서는 개정(안)을 토대로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할 후 시군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하기 바랍니다.

제명 인 ○○시(군)세즈혜증지청조리(인) 1부. 1부.

〈천리안으로 “신문책주례” 제목으로 송부〉

지 무 루 공 조

전결 자치행정국장 조규원

